

## 지식재산관리내규

2010. 3. 1. 제정  
 2014. 10. 1. 일부개정  
 2015. 11. 1. 일부개정  
 2020. 1. 1. 일부개정  
 <기술사업부>

제 1 조 (목적) 이 내규는 고려대학교의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외부지원 연구에 관한 신고) ① 교직원 등이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교직원 등은 계약체결 이전에 산학협력단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산학협력단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해야 한다.

③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신고된 계약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외부지원 연구에서 발생하는 발명의 권리귀속 및 제반비용 등을 고려하여 당해 계약체결을 승인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해당 교직원 등과 산학협력단은 당해 연구과제 수행결과 등에 관하여 확약 또는 보증을 하거나 이에 관한 손해배상약정을 해서는 안된다.

제 3 조 (외부지원 연구로 발생된 직무발명의 귀속) ① 외부지원 연구에서 나온 지식재산권 등은 발명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학교의 소유로 하나, 지원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발명자와의 협의를 거쳐 소유권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②외부지원 연구에서 나온 지식재산권을 지원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할 때, 지원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지원기관에서 부담하거나 또는 지원기관에서 지원받은 연구비에서 부담한다. 단, 지원기관이 비영리기관일 경우에는 지원기관에서 지원받은 연구비에서 계상하도록 한다.

③외부지원기관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공동발명에 대한 출원인 지분 및 그 지분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을 출원전에 서면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 4 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진 직무발명의 귀속)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소유권의 귀속을 조정해야 할 경우, 교직원 등은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도록 해야 한다.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제 5 조 (직무발명 등의 신고) ① 교직원 등이 직무발명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양식을 작성하여 특허관리시스템(KIPS: Korea University Intellectual

Property System)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발명신고서
2. 발명내용 설명서
3. 기술서 정보
4. 선행기술조사서

②교직원 등은 직무발명을 특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양도하여야 한다.

③산학협력단은 제1항에서 규정한 양식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교직원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 6 조 (지식재산심의위원회의 기능) 규정 제15조에 따라 지식재산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사항을 심의한다.

1. 발명 등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관한 것
2. 직무발명 등의 권리의 귀속에 관한 것
3. 직무발명 등의 기술적 평가에 관한 것
4. 직무발명 등의 출원, 등록 및 이것의 비용에 관한 것
5. 공동발명자의 지분 비율에 관한 것
6. 지식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것
7. 지식재산권의 유지에 관한 것
8. 기술이전 보상금에 관한 것
9.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개정에 관한 것
10. 지식재산권 관련 인센티브에 관한 것
11.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 관한 것
12. 기타 산학협력단이 요청한 사항

제 7 조 (특허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 ① 규정 제18조에 따라 특허심의 위원회는 지식재산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로서 운영된다.

②특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산학협력단 내부구성원으로 구성된다.

③ 특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에 대한 기술성, 시장성, 권리성 평가
2. 특허출원 및 등록 비용 차등 지원을 위한 발명의 선별평가
3. 기술박람회 및 마케팅 출품 대상 선정
4. 기타 지식재산권관리 관련 세부 운영 사항

제 8 조 (해외특허비용 등의 지원)① 해외특허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 발명 자는 산학협력단에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산학협력단은 발명자가 해외특허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된 기술을 평가 및 심의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은 신청기술의 평가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산학협력단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한달이내에 최종 결과를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최종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발명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선정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산학협력단 지원 하에 해외출원을 진행할 경우 개별국 진입은 최대 3개국을 초과할 수 없다. 개별국 진입시 해외특허출원 심의를 별도로 진행한다. 단,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만 진입국가를 확대할 수 있다.

⑥ 산학협력단이 해외출원 미지원하기로 결정한 건에 대하여 발명자가 해외출원하기를 원하는 경우 산학협력단과 발명자가 10:90의 지분비율로 해외출원을 진행할

수 있으며, 비용도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제 9 조 (지식재산권의 포기) 산학협력단은 규정 제7조에 의하여 교직원 등에 직무발명의 승계통지를 한 이후라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승계를 취소할 수 있다.

1.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직무발명이 특허성 결여로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직무발명으로 승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0 조 (지식재산권의 유지) 삭제 (2020.1.1. 개정.)

제 11 조 (지식재산권의 실시)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기술이전 또는 실시권 설정을 요청받은 경우, 산학협력단은 당해 발명자의 협조를 받아 실용화 가능성에 관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당해 발명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12 조 (기술이전계약 등의 체결) 산학협력단은 제3자의 기술이전 또는 실시권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술이전계약 또는 실시계약의 종류 및 그 실시료를 결정하여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기술 수요
2. 시장 규모
3. 실시범위 및 기간
4. 투자연구비 및 기간
5. 기술의 독점적 실시 여부

제 13 조 (기술이전계약 등의 해지) ① 산학협력단은 실시자가 학교의 기술자체가 실용화에 부적합하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기술이전계약 또는 실시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실시자의 요구, 주장, 발명자의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지식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실시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실시자가 생산을 포기한 경우
2. 실시자가 조업을 중단하여 기술실시 등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실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실시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 14 조 (보상금 지급시 과세) 기술이전 계약의 대상 중 등록특허(비과세)를 제외하고 기술이전 보상금 지급시 과세한다.

제 15 조 (기술이전기여자 인센티브 지급) 지식재산 관리규정 제20조(보상금) 관련 기술이전기여자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① 기술사업부 전담인력에 의해 자체발굴된 수요기업과 기술이전이 체결된 건에 대해서는 총 기술료 입금액의 10%를 해당 기술이전 기여도를 반영하여 지급한다.(\*발명자 확인서 별첨필요)

② ①항을 제외한 기술이전 실적에 대해서는 5%를 기술사업부 전체 업무기여도를 반영하여 지급한다.

## 보 칙

제 16조 (국가 R&D 과제 성과) 국가 R&D 과제의 성과로 창출된 특허 및 기술이전은 공동관리 규정 및 해당사업의 규정에 따라 우선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명자는 이에 따른 절차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4조 신설)

##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8조 제6항 개정)

##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0조)